

인천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가단290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나637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가단2904 판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석

피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임영준

변론 종결2018. 7. 3.

판결 선고2018.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 3.

28. 접수 제70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허위의 채권에 기초하여 경료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이 법정에 제출한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에는 2016. 1. 11.부터 2016. 8. 11. 까지의 거래내역 및 거래금액과 2017. 3. 30.까지의 거래와 관련된 입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고, 위 거래처원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D작성의 사실확인서1)에는 '2016. 2.경 마장동 지인을 통해 피고의 E이사(실 대표)를 소개받아 지육 거래를 하게 되었다. 지육거래 중 물품공급 금액 보다 B2)에 수금해 준 금액이 적게 되어 미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피고의 E이사가 미수 증가되어 지육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담보물건이 있으면 근저당설정하여 물품공급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 조카 F(사업상 동료) 소개로 원고 소유의 강화도 펜션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었다. 담보설정금액은 이억 원을 설정하였는데 강화도 펜션은 2억 원의 가치가 나오지 않지만 피고의 E이사는 이억 원을 설정하여 물품공급을 추가로 하였다. 지육이 입고된 금액보다 수금한 금액이 적어 점차적으로 미수금이 증가하여 금액이 4억 정도 되어 지육공급이 중단되었다. 담보를 제공해 주신 물상보증인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차후

미수금을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③ 위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물품을 공급한 시기는 2016. 8. 11.까지이고, 그 때 이후로는 피고가 물품을 공급한 내역이 없으며, 위 시기까지의 미수금액은 422,328,728원 상당인 점, ④ 위와 같은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의 내용과 D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지육이 입고된 금액보다 수금한 금액이 적어 점차적으로 미수금이 증가하여 그 금액이 4억 정도 되어 지육공급이 중단되었다'라는 부분은 그 주요내용이 일치하는 점, ⑤ D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위 내용은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이 양자 사이의 통모에 의한 허위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인 점, ⑥ 피고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를 채무자, 원고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016. 3.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2호증)가 존재하고, 위 계약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불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위 양자 사이의 가장행위에 기초한 허위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불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구민

별지

1) 원고가 소장제출 당시에 기재한 증거번호는 갑 제3호증의 1.

2) 피고를 의미함